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5
----------	-----

2024. 4. 30.(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박재주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재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사업 내용 (안 제4조)
-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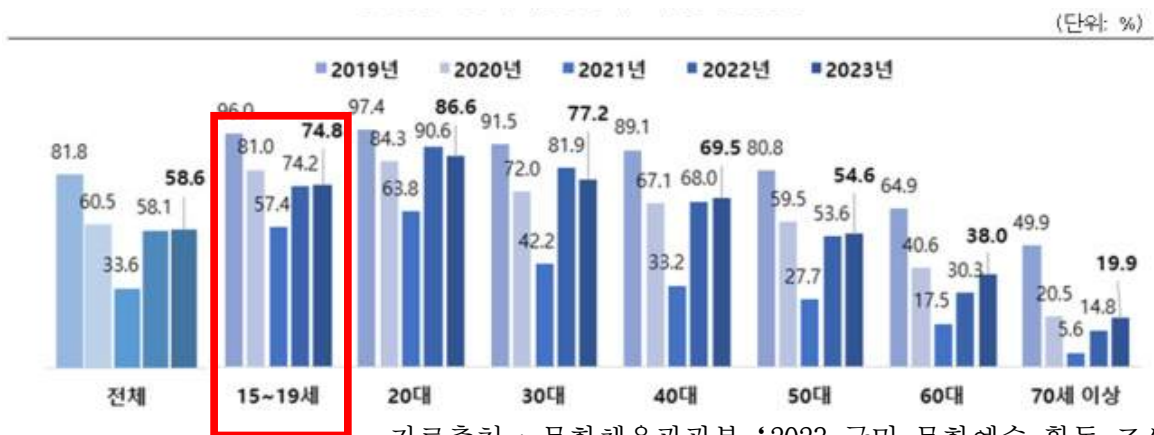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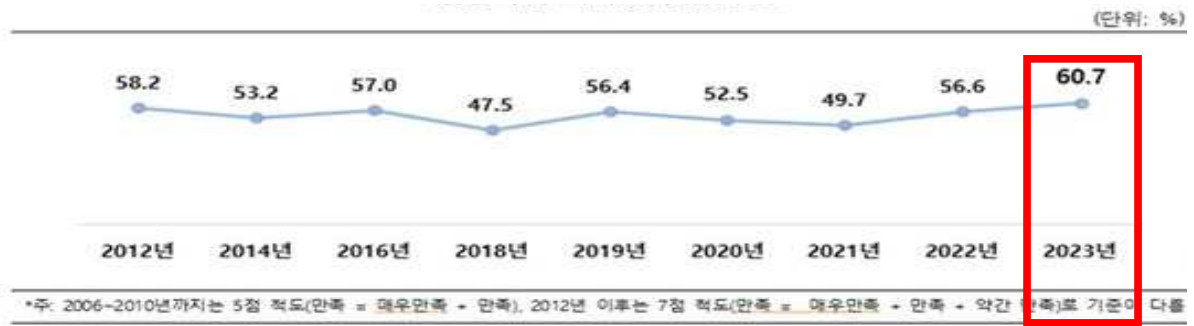
- 지난 해 우리 국민 전체의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58.6%, 이 가운데 15~19세 청소년 세대의 문화예술 직접 관람률도 74.8%에 이르며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6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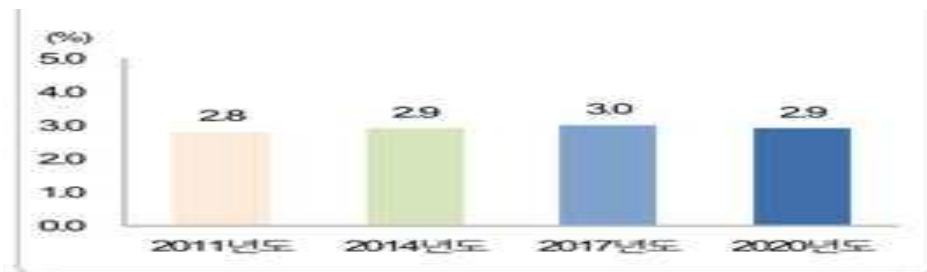
<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 >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국민 여가 활동 조사’

- 반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등의 참여를 통한 여가 활동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경우 문화예술 및 체육 등을 위한 시설 접근성과 이동 불편,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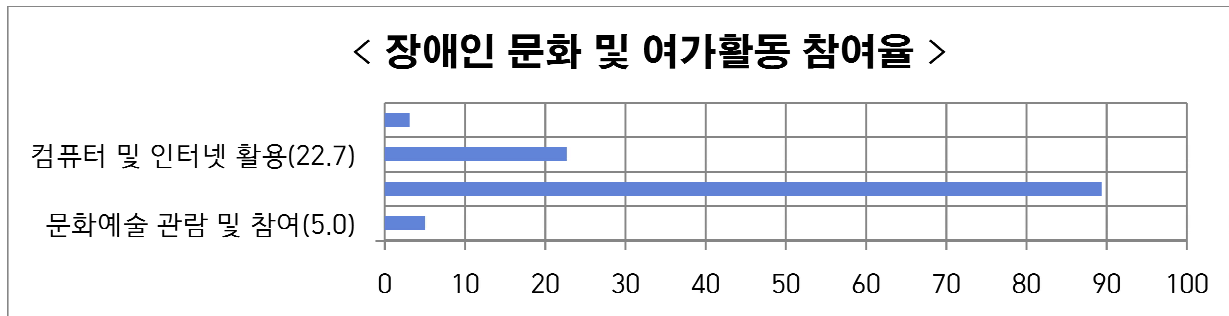
< 장애인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



* 주: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실태조사」

(단위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여가 활동의 대부분을 TV시청 및 인터넷 등 집안에서의 여가 활동이 차지하는 등 장애로 인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애를 가진 경우 연극·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 직접 관람률은 4.6%정도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서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현실 속에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 기회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는 해당 분야의 기능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재능 발굴과 성과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성장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심리적인 면에서도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장애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 기회**’¹⁰⁾실현을 위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취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국정과제¹¹⁾이며 이를 반영한 ‘제6차 충북 특수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10)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 ⑥ (생략)

1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국정과제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 예산 등을 통해 매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문화예술 지원 (교육지원청)	60,000	60,000	60,000	70,000	70,000	
문화예술 지원 (특수학교)	50,000	50,000	50,000	60,000	60,000	
체육활동 지원 (특수학교)	30,000	30,000	30,000	40,000	40,000	
합계	140,000	140,000	140,000	170,000	170,000	

○ 그러나, 2024년도의 경우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액이 23년도 대비 70% 감액¹²⁾되며,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에 대한 사업 지원이 축소되었음.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장애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예산과 사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예산안 중

구분	2023년		2024년 본예산 요구액						증감 (B-A)
	본예산 (A)	최종 예산	자체	특교	국고	비법정	기타	계(B)	
장애학생 문화예술	140,000	140,000	0	49,000	0	0	0	49,000	△91,000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장애학생 맞춤형 건강체육 활동 지원(특수학교) ○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문화예술활동프로그램 2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특수(5,000천원, 1교) 5,000천원 ▪ 사립특수(5,000천원, 4교) 20,000천원 - 특수학교체육활동프로그램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특수(5,000천원, 2교)10,000천원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운영 체제·개선(14,000천원, 1회) 14,000천원 ○ 편성·증감(전년대비)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문화예술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계상 								49,000

- 한편,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곳은 대전과 세종시, 전라남도과 충청남도 등 4곳임.

【 시도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24년 04월 기준)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자
1	대전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	2017.07.07.
2	세종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	2023.12.18.
3	전남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2024.04.04.
4	충남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5.30.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 확대와 함께 더불어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명기하였음.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은 ‘2024년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 중 기본계획을 통해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추진하고 있음.

【 충북특수교육 기본 계획 】

분야	세부과제(주요 내용)
③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4. 순회교육 지원 강화 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출처: 2024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

【 2024. 충북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현황 】

○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사업 예산: 특수학교 11교 지원

(단위: 천원)

학교명	운영 내용	2024.예산
청주혜화학교	문화 예술(인문융합 음악놀이, 미술놀이) 프로그램 운영	5,000
이은학교	문화예술 직업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
청주성신	역도선수 양성프로그램 운영, 악기(현악기)연주 프로그램 운영	13,000
청주혜원학교	체육(1인1운동 특기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 물품 구입	5,000
충주혜성학교	문화예술(미술) 및 체육(무용, 요가) 프로그램 운영	5,000
청주맹학교	문화예술(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5,000
충주성심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및 대회(작품전시회 포함) 참가	5,000
충주성모학교	골볼 선수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자유학기제 연계 골볼 과목 운영	7,000
송덕학교	교육과정 연계 문화예술스포츠(악기, 무용, 디자인, 밴드 등) 활동 운영	5,000
꽃동네학교	문화예술프로그램(국악, 무용) 프로그램 운영	5,000
제천청암학교	역도부 운영 및 역도선수양성 프로그램 운영	10,000
합계		75,000

○ [체육건강안전과]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지원 내용	2024.예산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인건비	사립특수 3명	113,910
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비	사립특수 3명	3,000
소규모학교체육여건개선	사립특수 1교, 학교체육시설 보수	4,000

충북장애학생체육대회	체육대회 운영	23,150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	189,070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선수 지원	31,550
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	8,400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사립특수 2교	93,865
학교운동부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지원	46,200
합계		513,145

자료 : 충청북도교육청 창의특수교육과

○ **안 제5조(교육 및 연수)**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담당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특수교사를 비롯해 일반 체육교사와 스포츠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교육을 위한 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일반적인 교수 능력 향상 외에도 대상 교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비장애학생 통합교육¹³⁾** 기회 제공을 확대해 학생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문화 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으며,

○ **안 제7조(포상)**에서는 교육감이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13) 2024년 충북교육청 추진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체험활동 및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운영 적극 장려
 ⇒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 (국립특수교육원-대한장애인체육회 협업 운영) : 일반교사 참여 안내 등 연수 기회 제공

기관별 추진 사업을 활용한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와 함께 전문 예술인과 체육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의 참여와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의 문화 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는 등 또 하나의 사회 참여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와 더불어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해서도 재능 발굴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진로 교육 측면의 계획 수립·추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체육”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소질과 역량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관련 행사 개최·참여 지원
3.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